##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06

발의연월일: 2024. 12. 16.

발 의 자:임호선·김승원·윤호중

이병진 • 이재정 • 권칠승

허 영·송재봉·고민정

정준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 시설에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12월 기준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38만대로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설치된 충전기수도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파트 등 대규모 건물에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다룬 별도의 조항이 없어화재발생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지하주차장 등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지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13항 신설). 법률 제 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하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취약지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 ⑫	전용주차구역 등) ① ~ ⑫
(생 략)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지하주차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
	재 취약지역에 설치된 전기자
	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